

#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

#### 1. 개 요

- 서울시교육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<sup>1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·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조례」에 근거하여 각각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음

<표 5-1> 서울시교육청 기금현황

연번	기 금 명	설치연도	근거법령	설치목적
1	감채기금	2007	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	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
2	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2016	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기금 설치·운용조례」	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·조성

#### 2.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

-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용하는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017년도 수입·지출 총 규모는 각각 0원과 220억 6,100만원임

<표 5-2> 2017년도 기금 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7년 (A)	2016년 (B)	증감	
			증감액 (A-B)	증감률
감채기금	0	0	0	0
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22,061	5,933	16,128	271.8

#### (1)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

- 2017년도 감채기금의 조성규모는 0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음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(이하 생략)

<표 5-3> 2017년도 감채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금명	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(A)	2017년도		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(B=A+㉠-㉡)	증 감	
		수입㉠	지출㉡		금액 (C=B-A)	비율 (C/A)
감채기금	0	0	0	0	0	-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제2항2)에 따르면 순세 계잉여금의 20% 이상의 금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, 지방채 상환재원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, 2016년 10월 27일 현재 지방채 미상환 잔액 1조 1,446억원 전액이 국가부담인 것으로 확인됨

<표 5-4> 지방채 발행 현황

2016. 10. 27. 현재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별(사업연도)		차 입 액 (A)	상 환 액 (B)	잔 액 (C=A-B)
합 계		1,188,295	43,694	1,144,601
국가 부담	학교신설('13)	131,082	43,694	87,388
	학교신설('14)	59,514	0	59,514
	'09 기금지방채차환('14)	182,629	0	182,629
	교원명예퇴직('15)	256,174	0	256,174
	유치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('15)	268,763	0	268,763
	교부금차액보전(누리과정)('15)	137,722	0	137,722
	학교신설('15)	152,410	0	152,410

-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3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)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「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(교육부, 2016.9.)」에서도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 운용 혁신(정비)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,

- 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. **다만,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
- 3)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  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  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- 4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6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(移入)하여야 한다.

- 서울시교육청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제2항5)의 단서를 사유로 2015년도부터 동 감채기금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‘2017~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’에 반영된 기금 운용계획에서도 감채기금 조성계획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

○ 따라서, 서울시교육청에서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치 또는 폐지<sup>6)</sup>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(2)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

1) 기금총괄

-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<sup>7)</sup>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2016년도에 설치됨
-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(이하 ‘건립기금’ 이라 함)의 존치기한은 2020년까지로 5년간 1,500억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5년간 943억원의 기금적립금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

<표 5-5> 건립기금 연도별 운용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건립기금	149,887	5,933	22,060	48,655	44,105	29,134

주 2017~2020년은 ‘2017~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’(p.32)에 의함

<표 5-6> 교육비특별회계 상 건립기금 적립 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기금적립금 (구성비)	94,319	5,909 (0.1)	15,931 (0.2)	32,100 (0.4)	26,191 (0.3)	14,188 (0.2)

주 1. 2017~2020년은 ‘2017~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’(p.34)에 의함

주 2. (구성비) : 2016년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립기금의 비율이고, 2017년은 세출예산(안)편성액에 대한 비율이며, 2018~2020년은 ‘2017~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’(p.28)에 의한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임

- 2017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165억 5,600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규모(59억 3,300만원) 보다 106억 2,300만원 증가하여 약 3배 정도 커진 규모임

5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) 감채기금 조례 폐지 사례

- 4개 교육청(강원 대전, 제주, 인천) 감채기금 폐지
-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2017.1.1. 폐지 예정

7)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 : 1,344억원(신청사 1,247억원, 연수원 97억원)

<표 5-7> 2017년도 건립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금명	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(A)	2017년도		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(B=A+㉠-㉡)	증 감	
		수입㉠	지출㉡		증감액 (B-A)	증감률
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5,933	16,128	5,505	16,556	10,623	179.0

○ 2017년도 건립기금의 기금수지총액은 220억 6,000만원으로 2016년도(59억 3,300만원) 보다 161억 3,000만원 증가하여 약 4배정도 커진 규모임

<표 5-8> 2017년도 건립기금 기금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2017년 수입액	2016년 수입액	증 감		항 목	2017년 지출액	2016년 지출액	증 감	
				비율					비율
합 계	22,061	5,933	16,128	271.8	합 계	22,061	5,933	16,128	271.8
전입금	15,931	5,909	10,022	169.6	고유목적 사업비	5,505	0	5,505	순증
예치금회수	5,933	0	5,933	순증	예치금	16,556	5,933	10,623	179.0
이자수입	197	24	173	720.8					

2) 기금 수입·지출계획

○ 2017년도 수입계획은 220억 6,100만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 59억 3,300만원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9억 3,100만원과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1억 9,700만원임

<표 5-9> 건립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장	관	항	목	2017년 수입액	2016년 수입액	증감
수입 합계				22,061	5,933	16,128
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	21,864	5,909	15,955
		보전수입 등		5,933	0	5,933
		예치금회수		5,933	0	5,933
		<b>예치금회수</b>		5,933	0	5,933
		내부거래		15,931	5,909	10,022
		전입금		15,931	5,909	10,022
		<b>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</b>		15,931	5,909	10,022
자체수입				197	24	173
		이자수입		197	24	173
		이자수입		197	24	173
		<b>공공예금이자수입</b>		197	24	173

- 동 기금은 「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(교육부, 2016.9.)」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수입항목8)을 설정함
- 지출계획의 경우 220억 6,100만원으로 예치금 165억 5,600만원과 신청사 건립경비 55억 500만원(건설사업관리용역비 10억원,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41억 3,000만원, 교통영향평가용역비 3억원, 시설부대비 7,500만원)을 계획하고 있음

<표 5-10> 건립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2017년 지출액	2016년 지출액	증감
<b>지출 합계</b>						<b>22,061</b>	<b>5,933</b>	<b>16,128</b>
일반 공공행정						16,556	5,933	10,623
일반행정						16,556	5,933	10,623
재무활동						16,556	5,933	10,623
보전지출						16,556	5,933	10,623
<b>시교육청 금고예치</b>						16,556	5,933	10,623
예치금						16,556	5,933	10,623
교육						5,505	0	5,505
교육일반						5,505	0	5,505
기관운영관리						5,505	0	5,505
교육행정기관시설						5,505	0	5,505
<b>본청시설관리(신청사 건립)</b>						5,505	0	5,505
건설사업관리						1,000	0	1,000
설계비 및 설계보상비						4,130	0	4,130
교통영향평가						300	0	300
시설부대비						75	0	75
<b>직속기관시설관리(연수원 건립)</b>						0	0	0
설계비 및 설계보상비						0	0	0

-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12월까지 건축 인·허가를 전제로 그에 따른 소요경비(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용역 등)에 대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
- 지난 2016년 5월 제7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고, 10월에 용산구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조치계획보완요청9)에 따라 보완하여 2016

8) 수입항목 : ①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, ②기부금, ③용자원금회수, ④예치금회수, ⑤이자수입, ⑥기타 기금수입

9)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관련 조치계획 보완 요청(용산구청 도시계획과-11680, 2016.10.26.)

년 12월에 재심의 예정인 바, 심의결과에 따라 지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됨

- 아울러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10)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결과(권고사항)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,
  - 건립기금은 2016년 8월에 처음으로 운용계획이 수립·운용되고 있어 금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시 2015년도 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나,
  - 「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(교육부, 2016.9.)」에 따라 2016회계연도 건립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는 2017.7.31.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 결과(권고사항)를 2018년도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시 우리 의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---

10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  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  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7.24.>